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47

발의연월일: 2022. 12. 21.

발 의 자:정점식・박형수・서정숙

이종성 · 임이자 · 장동혁

전주혜 · 정희용 · 조정훈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법률 제 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대상, 절차, 규격,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내거소신고증"을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	2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6. 거주국</u>	<u><</u>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
	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
	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
	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
	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u><신 설></u>	⑧ 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
	소신고증의 발급 대상, 절차,
	규격,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
	<u>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 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 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u>국내거</u> 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 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 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 다.

<u><신</u>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 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 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